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2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전진숙・이수진・허종식

김정호 • 이인영 • 정을호

권칠승 • 이개호 • 임호선

박희승・김 윤・김선민

강선우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으로 써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(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12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)	제23조(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)
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	①
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	
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복	
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	
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	
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	
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	
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
	<u>국민건강보험공단</u>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